

【사업비 편성 가능 항목】

비목 및 편성항목	용도	비고
인건비		
사업운영 인력인건비	기획자, 행정인력 인건비 등 (공연, 행사, 전시 등) ※전체 사업비의 15%를 초과할 수 없음	
운영비		▶ 일용인력은경기도생활임금기준준용 [2022년경기도생활임금:시간당 11,141 원]강사의 경우, 하단의 강사료 기준 단가 (표) 참조 ▶ 업체를 통하여 물품 제작 시, 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내 제작비로 편성 ▶ 홍보물 제작시 준수 사항 - 사업명 < 2022 경기 상상 캠퍼스 퍼입 주 단체 협력 프로젝트 > 기입 - 「경기도, 경기문화재단, 경기상상캠퍼스의 후원」 로고 삽입 - 서적 등 인쇄물에는 「이 책은 경기도, 경기문화재단, 경기상상캠퍼스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.」 문구 삽입
일반수용비	1. 출연료, 스태프 인건비 등 각종 사례비 2. 통·번역료 3. 사무용품 구입비 4. 인쇄비 및 유인비 5.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6. 소모성 물품 구입비 7.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(계좌이체수수료, 우편 송금수수료, 물품의 보관·운송료,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, 상하차비, 선적·하역비 등) 8. 비품 수선비(무대 소품, 의상 수선 등) 등	
공공요금 및 제세	1. 보험료(공공보험) 2. 우편료	
임차료	1. 장소 대관료(공간사용료, 냉난방비 등) 2. 장비 임차료(차량, 기기 등)	
여비		
국내여비	숙박비, 교통비 등의 체재비 (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 당일 실 소요경비)	※자부담 권장사항
업무추진비		※자부담 권장사항
사업추진비	식비, 간담회비, 다과비	사업 수행 당일만 사용가능 식비 - 1인 8천원 다과&간담회비 - 1인 3천원

※ 강의 및 교육 예산편성 기준표

세부항목	세부내용
강사비	주 강사비 120분 기준 15만원 - 1일 최대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- 강사료는 프로그램 구성·진행·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강사에 지출되는 부대비용 추가 편성불가
	보조 강사비 120분 기준 10만원 (시간당 5만원 초과할 수 없음) - 보조강사는 아래항목의 경우 대해서만 허용 1) 프로그램의 특성상 보조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) 다수 인원 대상으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할 시 3) 프로그램 진행상 안전요원이 필요할 시